

제 안 설명서

【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(안)】

영 주 시

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(안)

의 안	20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8 . . 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제정이유

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관련 개별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
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폐지되므로,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
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운영협의회의 구성, 정관, 기능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내지 제5조)
- 나. 운영협의회 임원, 사무장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내지 제8조)

3. 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(발췌) 1부.

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)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 한다.

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

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.

제3조(정관)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

1. 명 청
2. 사업에 관한 사항
3. 회원의 권리 · 의무에 관한 사항
4.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5. 자산,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
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.

(제31회 - 총무 제1차 부록)

제5조(기구) ①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

제6조(임원)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

1. 회장 1인

2. 부회장 1인

3. 운영위원 20인이내

4. 감사 1인

②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

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

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

제7조(사무장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

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

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8조(재정) ①협의회는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

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회계년도 마다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.

④ 협의회 감사는 세입·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점검과 결산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
인가 된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령(발췌)

【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】

제21조(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)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.

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.

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2.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
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20호
- 의 안 명 :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총무국 총무과

2. 제안이유

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관련 개별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폐지되므로,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골자

- 가. 운영협의회의 구성, 정관, 기능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2조 내지 제5조)
- 나. 운영협의회 임원, 사무장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6조 내지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영주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

본 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기 위함으로

-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운영협의회의 구성, 정관, 기능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운영협의회임원, 사무장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서 기 조직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보고 협의회 정관도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음
-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본 조례안은 기구관련 개별 조례가 통합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998. 9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완 기